기초의학 장학금 지급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의과대학 장학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7조 2항에 따라 기초의학 분야에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 제도의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혜자격) 졸업 후 기초의학 분야에 지원하려고 하는 의학과 2학년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재학 중 매학기 성적이 평균 평점 80점 이상인 학생으로 한다.

제3조 (심사)

1. 지원하는 해당 교실 주임교수의 추천서가 있어야 한다.
2. 자격에 대한 심사는 장학위원회에서 한다.

제4조 (지급내역)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전액 지원한다.

제5조 (수혜기간) 수혜기간은 졸업할 때까지로 한다.

제6조 (장학금 지급의 중지, 취소 및 자격상실) 장학금 지급의 중지, 취소 및 자격상실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의과대학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제7조 (장학금의 반환)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자는 졸업 후 본교 기초의학 분야에 종사하여야 하며, 만일 타 분야에 종사할 시에는 지급받은 장학금 총액을 당해 연도에 반환해야 한다. 단 기초의학 분야에 종사중 중도 퇴직시에는 장학금 수령 기간에서 근무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장학금을 당해 연도에 반환해야 한다.

부 칙

1.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위원회의 결의에 따른다.
2. 이 규정은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